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57

발의연월일: 2020. 9. 7.

발 의 자: 안민석·한병도·송재호

송갑석 · 양경숙 · 윤미향

윤재갑 • 서동용 • 조오섭

박성준 · 김영호 · 문진석

유정주・김민철・이수진(비)

서영석 · 남인순 · 김승원

이용빈 · 유건영 의원

(20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남북관계와 남북간의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. 특히 민간 단체는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남 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정부가 지 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 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정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

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협업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 의2 신설 및 안 제13조).

법률 제 호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,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책무) ① 정부

는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

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

제13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통일부장관은"을 "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듣고"로 한다.

4.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2조의2(지방자치단체와 민간
	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책무)
	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교
	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
	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민
	간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
	구축하여야 한다.
	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
	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
	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
	을 수립·시행한다.
제12조의2(남북관계 발전에 관한	제12조의3(남북관계 발전에 관한
홍보 등) (생 략)	홍보 등) (현행 제12조의2와 같
	음)
제13조(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	제13조(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
수립) ①·② (생 략)	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3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
	등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
	<u>항</u>
<u>4.</u> (생 략)	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

-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⑤ (생 략)
-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 ④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 장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듣고-
 - ⑤ (현행과 같음)